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14317]	http://www.sgfco.kr/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 2021.11.08]	sgf@sgfco.kr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23.10.18]	

[피자더블업]

정 보 공 개 서

「(주)세광그린푸드리테일」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세광그린푸드리테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24, 5층(서초동, 청화빌딩)

[전화 : 02-581-8188]

[팩스 : 02-584-8188]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2-581-8188]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세광그린푸드 리테일	피자더블업 외2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24, 5층(서초동, 청화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6.11.02.	2016.12.01.	김슬기	02-581-8188	02-584-8188
	법인등록번호	110111-6220290	사업자등록번호		548-81-0077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김슬기	피자더블업 외2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24, 5층(서초동, 청화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슬기	02-581-8188	02-584-818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오현민	피자더블업 외2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24, 5층(서초동, 청화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슬기	02-581-8188	02-584-818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 해당 없음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피자더블업]라고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피자더블업	
상 호	피자더블업 ○○○ 점	
상표(서비스표)	한글 : 피자더블업	
상 표		출원준비 중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8,814,132	4,643,029	4,171,103	12,218,673	1,270,161	1,183,055
2022년	9,592,147	4,136,974	5,455,173	14,183,070	1,405,980	1,284,070
2023년	9,387,739	3,643,109	5,744,629	13,185,912	113,256	280,424

2)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당사의 가맹사업 매출액은 세광교대이층집 23.41%, 오목집 8.02%, 세광교대갈비집 1.24%, , 세광양대창 55.21%, 기타 12.12%로 산정하였습니다.
- ☞ 세광교대골목집, 통큰숯불갈비, 통큰삼겹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 ☞ 당사의 꼬꼬네 숯불집, 호우당, 미옥, 산청숯불가든, 포천김부자갈비, 램1997, 해장가, 옥란이네, 상무감자탕, 정갈분식, 콩다리분식, 달매우동, 텀즈업PUB, 포캄스, 치킨도리, 피자더블업, 부루노버거&샌드위치, 월화수카페, 늘송가든, 봉순이네 한상차림, 엄마네 냉장고는 가맹사업에 정으로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현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관련	김슬기	대표이사	2016. 12. ~ 현재	(주)세광그린푸드리테일 대표이사	가맹점 관리 회사업무 총괄
관련	오현민	사내이사	2016. 12. ~ 현재	(주)세광그린푸드리테일 사내이사	가맹점 관리 회사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상근	비상근	20
	2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세광교대이층집	가맹사업경영	2017. 06 ~ 현재	세광교대이층집(등록번호 20170719)이라는 브랜드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오목집	가맹사업경영	2018. 04 ~ 현재	오목집(등록번호:20180455)이라는 브랜드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세광교대갈비집	가맹사업경영	2018. 06 ~ 현재	세광교대갈비집(등록번호:20180745)이라는 브랜드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세광교대골목집	가맹사업경영	2019. 04 ~ 현재	세광교대골목집(등록번호:20190541)이라는 브랜드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세광양대창	가맹사업경영	2019. 10 ~ 현재	세광양대창(등록번호: 20190916)이라는 브랜드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통큰삼겹	가맹사업경영	2020. 07 ~ 현재	통큰삼겹(등록번호: 20200608)이라는 브랜드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통큰숯불갈비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예정	통큰숯불갈비(등록번호:20200954)이라는 브랜드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꼬꼬네숯불집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꼬꼬네숯불집(등록번호:20214306)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호우당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호우당(등록번호:20214305)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미옥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미옥(등록번호:20214307)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산청숯불가든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산청숯불가든(등록번호:20214304)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포천김부자갈비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포천김부자갈비(등록번호:20214312)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램1997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램1997(등록번호:20214303)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해장가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해장가(등록번호:20214311)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옥란이네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옥란이네(등록번호:20214310)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상무감자탕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상무감자탕(등록번호:20214308)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정갈분식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정갈분식(등록번호:20214324)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콩다리분식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콩다리분식(등록번호:20214316)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달매우동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달매우동(등록번호:20214315)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텀즈업PUB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텀즈업PUB(등록번호:20214314)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포캄스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포캄스(등록번호:20214319)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치킨도리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치킨도리(등록번호:20214318)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부루노버거&샌드위치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부루노버거&샌드위치(등록번호:20214320)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월화수카페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월화수카페(등록번호:20214321)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늘숨가든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늘숨가든(등록번호:20214323)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봉순이네 한상차림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봉순이네 한상차림(등록번호:20214313)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주)세광그린푸드리 테일/엄마네 냉장고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 예정	엄마네 냉장고(등록번호:20214322)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가맹점 운영권 내에서 사용	출원준비 중	-	-	-

▶ 당사는 위 상표를 출원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적재산권의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피자더블업] 을 시작한 날: 가맹사업 개시 예정

(직영점을 시작한 날 : 없음)

2. [피자더블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피자더블업	김슬기	가맹사업 개시 예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24, 5층

3. [피자더블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피자더블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피자	피자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피자더블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년도 말			2022년도 말			2023년도 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당사의 피자더블업은 가맹사업예정으로 가맹점이 없습니다.

5. 최근 3년간 [피자더블업]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증감
2021년	-	-	-	-	-	-	-
2022년	-	-	-	-	-	-	-
2023년	-	-	-	-	-	-	-

6. [피자더블업]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가맹본부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세광교대 이층집	20170719	기타외식	24/2	22/2	20/2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오목집	20180455	기타외식	10/0	10/0	10/0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세광교대 갈비집	20180745	기타외식	1/0	1/0	1/0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세광교대 골목집	20190541	기타외식	0/1	0/0	0/0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세광양대창	20190916	기타외식	61/1	65/1	61/1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통큰삼겹	20200608	기타외식	4/0	2/0	0/0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통큰숯불갈 비	20200954	기타외식	0/0	0/0	0/0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꼬꼬네 숯 불집	20214306	한식	-	-	-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호우당	20214305	기타외식	-	-	-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미옥	20214307	기타외식	-	-	-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산청숯불가 든	20214304	기타외식	-	-	-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포천김부자 갈비	20214312	기타외식	-	-	-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램 1997	20214303	기타외식	-	-	-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해장가	20214311	한식	-	-	-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옥란이네	20214310	한식	-	-	-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상무감자탕	20214308	한식	-	-	-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정갈분식	20214324	분식	-	-	-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콩다리분식	20214316	분식	-	-	-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달매우동	20214315	기타외식	-	-	-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텀즈업PUB	20214314	주점	-	-	-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포캄스	20214319	주점	-	-	-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치킨도리	20214318	치킨	-	-	-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브루노버거 &샌드위치	20214320	패스트푸드	-	-	-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월화수카페	20214321	음료(커피 외)	-	-	-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늘숨가든	20214323	한식	-	-	-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봉순이네 한상차림	20214313	한식	-	-	-
(주)세광그린 푸드리테일	엄마네 냉 장고	20214322	기타외식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의 피자더블업은 가맹사업예정으로 가맹점이 없습니다.

8. [피자더블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2023년	-	-

☞ 당사의 피자더블업은 가맹사업예정으로 가맹점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없음 : 작년 말 가맹지역본부 및 가맹지역사무소 현황은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0	-	-	
광고 및 판촉	비공개	비공개	0	-	-	

☞ 당사의 피자더블업은 가맹사업예정으로 광고 및 판촉비에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문의 전화번호
국민은행	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국민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국민은행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받아 보관
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국민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 실행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시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인터넷을 통해 예치 시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세광그린푸드리테일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없음 : 당사는 별도로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해당없음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해당없음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해당없음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피자더블업]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귀하와 협의한 별도 구입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500				(예외조건)
가맹비	3,300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은행 예치	반환 안됨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반환되지 아니함	
교육비	2,200	계약 체결	교육 후 반환	개정 전 교육비로 소요	개정 전 교육

		다음날까지 은행 예치	안됨		미 이수 시 반환
--	--	----------------	----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보증금	2,000	계약체결 다음날까지	가맹금 및 물품대금의 미지급, 본사에 대한 위약금 발생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비	3,300
교육비	2,200
계약이행보증금	2,000(부가세 없음)
합계	7,5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6]쪽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15평(49.5㎡)				
총계		58,900	3,927			*현장 실측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협력업체	33,000	2,200	별도 계약	공사착수 전 계약취소	내부공사
외부공사	협력업체	5,900		별도 계약	공사착수 전 계약취소	
주방설비/집기	가맹본부	16,000		별도 계약	설치 전 계약 취소	별첨2 참조
의/탁자 및 가구	협력업체	800		별도 계약	제작착수 전 계약취소	점포 실정에 따라 변 동
초도물품 (원.부재료)	가맹본부/지정 업체	2,400		공급 1일전	초도물품 미공급시	별첨1 참조
POS	가맹본부/지정 업체	800		별도 계약	설치 전 계약 취소	

- ▶ 인테리어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위 표의 금액은 배달전문점 매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위 표 중 인테리어 평당 가격은 계약당시의 경제상황 및 점포규모 및 실제 공사내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위 표의 3.3㎡ 당 금액은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주방설비/집기의 경우 가맹점의 면적과 비례하는 부분이 아니며, 가구의 경우 가맹점예정지의 홀 구조에 따라 책정됩니다.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직영점 및 가맹점 운영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추정 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가맹점 사업자와의 도면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가설, 간판, 도시가스, 냉난방, 소방, 화장실, 전기증설, 정화조, 냉동 창고, 소품 등) 와 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별도이며 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예: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디자인 및 설계에 대한 노하우 전수의 대가로 3.3㎡(1평) 기준으로 일금 이십칠만오천원 (₩275,000원, 부가세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단,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해서는 당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자더블업 영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당사가 규정하는 콘셉트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 희망자	1)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 위치를 선정하여 오는 경우 기존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규 가맹점의 위치를 허가함. 만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지 변경 권유함 2)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 입지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의 최종 결정 3) 가맹본부가 점포입지를 선정해 놓은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입지 안내 → 가맹희망자와 담당자가 현장 확인 → 가맹희망자의 최종결정

- ▶ 당사는 가맹희망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가맹점의 입지에 대해 조언을 하며, 입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합니다. 이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직원에게 가맹점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 가맹희망자는 본인의 책임과 권한으로 가맹점 입지(제3자와 체결한 점포, 장비, 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를 선정하였으므로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만 20세 이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종업원	당사 및 가맹점 사업자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만 20세 이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피자더블업]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물품리스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8) 최초 가맹금의 납부 방법

☞ 영업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해당 항목별 기한 내에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기준은 [35]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POS 순매출액의 2.2	익월 5일	후불로 반환없음	영업표지 사용대가	매월 말일 정산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광고별로 분담	추후협의	미 시행 시 반환	광고시행 후	광고 필요시점에 서면을 통한 별도협의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추후협의	미 시행 시 반환	판촉시행 후	판촉시점에 서면을 통한 별도협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해당없음				
점포환경 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없음		Ⅶ. 1.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협의	설치 전 100%	없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보수 훈련비	가맹본부	교육에 따라 다름	교육개시당 일 완납	없음		교육 필요시 지급
특별 훈련비(파견)	가맹본부	교육에 따라 다름	교육개시당 일 완납	없음		교육 필요시 지급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협의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없음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ERP 사용료	지정업체	협의	매월 15일	없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8%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없음		일체의 금전 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기준: 2023년)	내용(단위:천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해당없음 : 당사의 피자더블업은 가맹사업예정입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협의				
재계약비	가입비	1,650	계약만료 1개월전	반환되지 않음	계약금 성격의 금전	최초 가입비의 50%
	추가 훈련비	협의	교육 시작 7일전	교육 시작 1일 이전 계약 해지	교육개시 이후	추가교육 필요시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하거나 원할 경우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금에서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가맹계약기간에 대한 선금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에서 최초의 계약기간 중 잔여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귀하는 새로운 대체수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가)의 경우에 준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피자더블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가맹비·계약이행보증금·교육비를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당사와 귀하 사이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의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당사로부터 부여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의 비용은 계약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가 부담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의 종료 즉시 당사에 대한 채무잔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잔존 채무액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의 상호 및 상표, 기타 구조물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시스템 및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매뉴얼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귀하가 계약 종료에 따른 위의 조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지체1일당 3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니,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계약종료 후 조치 미이행시의 위약금조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피자더블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귀하는 당사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물품 및 상품을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해당없음 : 당사의 피자더블업은 가맹사업예정입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피자더블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직전연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피자더블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연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당사가 [피자더블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연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아래> 3)가맹점사업자의 가격결정의 제한 중 <상품명> 참조	①당사가 제공한 조리기준에 따르며 본사 영업표지가 부착된 그릇류에 제공할 것 ②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물품중단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간판철거와 계약해지	문의 : 당사 (02-581-8188)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전 상품의 주재료는 가맹본부에서 협의된 사항들로 사용하고 부재료 또한 가맹본부에서 개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리 시 표준화된 조리법을 사용, 동일한 맛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다른 가맹점 사업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에 기재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귀하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추후 제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권장가격 (단위: 원)	상품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메인		사이드		변동 시 서면으로 공지	2021. 09. 기준
콤비네이션피자	23,000	감자튀김	3,000		
슈퍼디럭스피자	23,000	치즈볼	4,000		
포테이토피자	23,000	치즈스틱	3,500		
페퍼로니피자	22,000	오븐스파게티	10,000		
하와이안피자	23,000	로제스파게티	10,000		
스파이시피자	22,000	치킨텐더	6,000		
베이컨체다피자	22,000	콘치즈그라탕	6,000		
갈릭피자	23,000	버팔로웁	6,000		
스테이크피자	24,000				
허니버터피자	22,000				
직화불고기피자	23,000				
콘피자	22,000				

[귀하가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피자를 판매하는 업종	피자더블업	-

- ▶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 피자더블업 』 가맹점 및 직영점 개설이 필요한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	특수 상권 내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표시
비 특수상권	가맹점 소재지 기준 반경 400m 이내 (별지에 정한 구역이 우선) 배달의 경우 영업지역 기준 반경 1km까지 가능 (배달 플랫폼에 매장 노출 시 피자더블업○○점 필수노출)	

※ ‘특수상권’ 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쇼핑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터미널, 경기장, 휴게소, 종합병원, 놀이공원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 상권을 의미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피자더블업]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피자더블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	-

▶ 당사의 피자더블업은 가맹점/직영점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 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 당사의 피자더블업은 가맹점/직영점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피자더블업]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 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 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3조 1항 3호 가목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3조 1항 3호 나목
○ 당사의 가맹사업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3조 1항 3호 다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에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3조 1항 3호 라목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34조 1항 1호
○ 사전 동의 없이 당사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34조 1항 1호
○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에 손해를 끼친 경우	34조 1항 1호
○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34조 1항 1호
○ 사전승인 없이 점포의 소재지, 상호, 사업자명의 등을 변경한 경우	34조 1항 1호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운영노하우전수 또는 경영지도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 거부하는 경우	34조 1항 1호
○ 로열티, 물품대금, 시스템사용료, 공사견적금액, 기타 본 계약에 따라 당사 또는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5% 이상을 연체하는 경우	34조 1항 1호
○ 제반시설(제11조) 제8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34조 1항 1호
○ 식품위생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의 위생 점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4조 1항 1호
○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게을리 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4조 1항 1호
○ 원부자재의 자점사입 기타 판매금지 조항(제22조)을 위반한 경우	34조 1항 1호

○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4조 1항 1호
○ POS 등 설비 및 기기(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4조 1항 1호
○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4조 1항 1호
○ 영업의 표준화 및 물품공급 등(제22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34조 1항 1호
○ 회계장부 등의 조사를 위한 당사직원의 점포출입을 불허하는 경우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당사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4조 1항 1호
○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34조 1항 1호
○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34조 1항 1호
○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당사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34조 1항 1호
○ 서면동의 없이 가맹점운영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	34조 1항 1호
○ 기타 가맹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맹계약에 따른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4조 1항 1호
○ 귀하가 개점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을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4조 1항 2호
○ 고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4조 1항 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4조 2항 1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4조 2항 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4조 2항 3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	34조 2항 4호

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4조 2항 5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4조 2항 6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4조 2항 7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4조 2항 8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4조 2항 9호

만일 귀하의 사정에 의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1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

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당사의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관리팀 (02-581-8188)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운영노하우 전수)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금의 경우 양수인이 잔존계약기간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맹비를 당사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고 계약내용에 따라 갱신 시 재가맹비만 지급하면 되나, 양수인이 신규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맹비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리행사 시킬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및 승계의사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의 사후통지 및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및 승계의사를 당사에 통지 → 요건 검토 → 승인 통지(통지받은 후 1개월 이내)	교육비 지급 및 교육수료
업무위탁	불가	-		

대리행사	불가	-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가맹본부의 [피자더블업]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계약종료 후 1년 동안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 자기 또는 자기가 제3자의 명의로 [피자더블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피자를 판매하는 업종 또는 가맹본부 ▶ 당사에서 판매하는 메뉴를 매장에서 즉석형태로 만든 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02-581-8188)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2:00 ~ 22:30	월 26일 이상	문의: 관리팀 (02-581-8188)

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귀하가 합리적인 사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하기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휴업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휴업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직접 근무	당사로부터 승인 받은 자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사는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및 영업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자가 상기 사항 점검이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자신의 가맹점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의 50%	할인금액의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팸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 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월 할인 금액 제시 → (본부)자료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 까지

- ▶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판촉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으며, 귀하는 당사가 위와 같이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전국 규모 혹은 자신이 속한 지역규모의 광고 및 판촉활동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기로 합니다. 다만 판촉의 경우에는 찬성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광고와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중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한 광고를 시행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광고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한 총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자기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독자 광고 판촉 활동을 전개할 경우 귀하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상표” 등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승인을 가맹본부에게 득해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목적 외에 사용 할 수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 귀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계약종료 후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36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거나, 자신이

임의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당사의 전용제품을 [피자더블업]영업 이외의 다른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월 1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약금 = 잔여개월수 x 1,000,000원(15일 이상 남은 개월은 1개월로 계산)

- ▶ 사업자명의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별로 1,000만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당사나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매출감소 등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7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70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56~53 (4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52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52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51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50~45 (7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44~13 (32일)	
간판/기기·집기 외/초도 상품 공급	- 외장, 간판 등 필수 시설물 설치 및 공사	D-8	
운영 노하우 전수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3~8 (5일)	
가오픈	리허설 및 가오픈	D-8~1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비고
개점지원	가맹점 오픈 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제작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오픈일로 부터 3일간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 부담	비 고
가맹 본부 요청	제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 본부 부담	문의: 가맹본부 (02-581-8188)
가맹 점사 업자 요청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 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가맹점 부담	

		제시하고 이를 설명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없음 : 당사는 [피자더블업]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피자더블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피자더블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훈련	5일	2,200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훈련	상황에 따라 다름	상황에 따라 다름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5조에 따라 개점 3일 전까지 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

으며 신규훈련을 수료하지 않은 자는 음식의 조리 및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2			
3			

▶ 당사의 피자더블업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581-818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 상품 등(원·부재료)의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별첨 [2] : 주방 기기 및 집기 등의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주)세광그린푸드리테일	영업표지	피자더블업
제공확인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주)세광그린푸드리테일 대표이사 _____(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주)세광그린푸드리테일	영업표지	피자더블업
제공확인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주)세광그린푸드리테일 대표이사 _____(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2023년 2022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1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